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888200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대학교 재학생)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주 문

○○대학교총장에게, ○○생활관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2021. 11. 27. ○○대학 기숙사(○○생활관) 학생들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는 뒷머리를 하얗게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하면서 위 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함으로써 학생들

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및 피진정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우수한 ○○○ 양성 및 ○○생활 훈련을 위하여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특수목적대학교이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1조 제2항은 생활관장에게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장 및 용모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생활관에서는 학생들이 지급된 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점검하고 있다. 과거 ‘단정한 스포츠형’, ‘윗머리 옆머리 길이’ 등의 엄격한 두발 규제를 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하고자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이고, 현재는 제복의 품위에 대한 사회적 통상기준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우수한 ○○○ 양성을 위해 국비로 지급받은 제복 중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모 및 정모 착용에 문제가 될 정도로 옆머리 및 뒷머리가 긴 경우는 단정하지 않은 용모로 판단하나, 모자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앞머리 및 윗머리, 투블럭 등 통상 수준의 스타일은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 중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두발을 점검한다

는 내용은 ○○생활관 지침 제11조 제4항 복장점검 시 학년별 점검시간 및 집합장소를 사전에 공지한다는 지침에 의거한 점검 방식이다. 하지만 진술한 내용 중 옆 뒷머리를 하얗게 잘라야 하며,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두발 규정을 강요한다는 내용은 해당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저학년을 지도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임의로 교육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학교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생활관 규정,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복장규정, 교육부의 피진정학교 종합감사 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학교 ○○대학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8. 11. 12. 피진정학교 ○○생활관 규정에서 두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삭제 이전 동 규정 제35조(두발)에 따르면, “남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하며, 여학생의 두발은 깃에 닿지 않는 단발 또는 검정색 머리망을 착용하여 어깨에 닿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1조(복장)는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관장은 복장 및 용모를 점검할 수 있으며, 1, 2학년의 복장 점검은 ○○○○○가 실시하고 4학년은 지도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별표 3]에 따라 용모 및 복장상태가 불량한 학생은 과실점 10점 부과 대상이다.

라.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들은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복장규정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업 관련 활동을 하거나 외출을 할 때 정해진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착용하는 모자인 정모 및 통상모는 다음 사진과 같다.

<사진> 정모(좌측) 및 통상모(우측) 사진



사. 교육부는 2019. 4. 22.~2019. 5. 3. 실시한 피진정학교 종합감사 결과, 피진정학교 ○○생활관에서 2016년도 1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 남학생의 두발을 단정한 스포츠 머리로 제한하고 투블릭 등을 금지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 제한 규율을 임의로 정하여 학생들에게 이행토록 강제한 사실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선방

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해 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학생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7) 결정 등). 또한,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36300 결정, 17진정1072800 결정 등)한 바 있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 유지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원칙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2018. 11. 12. ○○생활관 규정에서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생활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진정학교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학 남학생들에게 뒷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2021. 11. 27. ○○생활관에서 ○○○○○○ 및 지도관이 두발 점검을 하면서 뒷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강요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19. 4. 22.~2019. 5. 3. 실시한 피진정학교 종합감사 결과, 과거 피진정학교는 두발 제한 규정이 삭제된 2018. 11. 12. 이후인 2019년도 제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 머리, 투블럭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학생들에게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실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학교 ○○생활관에서는 여전히 남학생들에게 스포츠형으로 두발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사 피진정학교에서 스포츠형 두발을 학생들

에게 직접 강요하지 않더라도, ○○생활관에서 용모 점검을 실시하는 ○○
○○○ 및 지도관 등이 관행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별표 3]은 용모 및 복
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생활관 학생들이 ○○○○○○ 및 지도관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
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대학교 ○○대학 학생들은 제복을 착용하는바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
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
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
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
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진정학교가 ○○생활관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
학교총장에게, ○○생활관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
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5.

위원장 박찬운

위원 석원정

위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 「○○대학교 ○○생활관 지침」

제11조(복장)

- ① ○○대학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복장은 동정복, 춘추정복, 하정복, 동통상복, 하통상복, 동잠바, 실습복 및 학년별 지정된 생활복으로 한다.
- ②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관장은 복장 및 용모를 점검할 수 있다.
- ③ 1, 2학년의 복장점검은 ○○○○○가 실시하고 4학년은 지도관이 실시한다.
- ④ 복장점검 시 학년별 점검시간 및 집합장소를 사전에 공지한다.
- ⑤ 복장 규정 미 준수 시 점검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⑥ 복장 점검 미 참석자는 특별 복장 점검을 실시한다.